

##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

1999.03.26	제 정
1999.10.16	개 정
2000.10.01	개 정
2009.12.16	개 정
2010.10.15	개 정
2011.9.30	전면개정

**제 1 조(목적)** 이 기준은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(이하 ‘회사’ 라고 한다)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할 투자중개업자의 평가, 선정, 배분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자산운용의 건전성 증대 및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 조(투자중개업자 평가시 고려사항)** 회사는 투자중개회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(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 및 매매수수료)이나 수익
2. 각 상품 중개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
3. 세미나, 기업방문 및 NDR 주선 능력
4. 투자정보 제공
5. 투자중개회사의 재무상황,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
6. 매매체결 능력 등

### 제 3 조(투자중개업자 평가 기준)

① 투자중개업자는 조사분석서비스와 매매/체결능력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기 평가하며, 개별 중개회사에 대한 최종 평가는 조사분석서비스와 매매/체결능력 배점 결과를 합산하여 결정한다.

② 조사분석서비스의 평가는 주식운용본부내 운용역 및 리서치담당자가 실행하며, 매매/체결능력의 평가는 운용지원팀(트레이더)에서 담당한다. 이때 각 항목별로 가중치를 두어 평가한다.

③ 조사분석서비스와 관련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조사분석서비스 평가위원회의 합의 및 결재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.

구분	평가항목	세부내역
조사분석서비스	세미나 및 설명회	거시경제분석, 시장전망, 산업전망 및 개별기업 분석 등의 세미나를 질적/양적 가치를 고려하여 평가
	기업탐방 및 NDR	기업탐방 수행 및 내방 NDR 를 수행하는 증권사에 대해 질적/양적 가치를 고려하여 평가
	투자정보	자산배분, 시장전망 및 종목투자 등 제공한 투자정보의 펀드 운용 기여도에 대하여 질적/양적 가치를 고려하여 평가
매매/체결 능력	정확성 및 안정성	매매체결시 일어날 수 있는 주문 수락 실수의 빈도 및 영향력에 대해 평가
	신속성 및 성실성	매매체결의 신속한 처리 능력과 주문 특성 및 유형을 파악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
	시장정보 제공 능력	가격의 이상 변화에 대한 체크 등 시장정보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

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평가 기준은 평가위원회의 결의에 따르며, 평가위원회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하고, 기준이나 항목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준법감시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이 기준은 회사가 운영하는 모든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며, 투자일임자산 및 변액보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 다만, 사모펀드의 고객이 투자계약서, 문서, 지침 또는 통보의 방법으로 별도 요청 할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## 제 4 조(투자중개업자의 평가)

①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평가는 매 2 개월마다 하되, 상황에 따라 운용본부장의 승인 하에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.

② 운용본부는 업무에 따라 거래회사의 목록을 유지하여야 하며, 최소 5 개사 이상의 투자중개회사가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평가 주기별로 각 투자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를 정한다

④ 배정기준에 따라 투자중개업자는 A~D 등급으로 구분하며, 등급에 따라 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율은 차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⑤ 대량매매, 사이버 매매, 프로그램매매 등 합리적인 사유에 의하여 배정기준에 따른 매매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매는 배분비율 합산시 제외하며, 이러한 매매내역을 기록, 유지한다.

**제 5 조(매매배분 및 약정관리)**

- ① 투자중개회사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순위 및 수수료율을 배분 및 약정관리에 반영한다.
- ②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차등하여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매 2 개월 초에 직전 2 개월간에 실행된 내역을 집계, 작성하여 운용담당본부장과 준법감시인의 결재를 득한다.
- ④ 집계내역이 배분원칙을 위배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운용본부장은 그 내용과 발생 사유를 명시하여 운용총괄 임원 및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 6 조(조사분석서비스 평가위원회)**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및 조사분석서비스의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분석서비스 평가위원회를 구성, 운영하여야 한다. 단, 조사분석서비스 평가위원회 위원은 사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
**제 7 조(특례)** 채권 및 파생상품 등 수수료 체계와 거래의 방법이 주식매매와 현저히 다른 유가증권의 매매위탁은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되, 중개회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매매위탁하여야 한다.

**제 8 조(공시 및 보관관리)**

- ① 본 기준은 당사 및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
- ② 운용본부는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평가 및 실행내역 자료를 10 년간 보관, 관리하여야 한다.